

# 감 사 보 고 서

##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이사회 귀중

본 감사인은 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의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(어린이집 : 2016년 2월 28일, 14개월)로 종결되는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와 장부를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으며, 감사인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▷ 법인사무국의 2015년 회계연도 예산총액은 금 15,870,482,000원이며, 결산총액은 금 15,724,787,119원입니다.

▷ 법인사무국의 2015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, 2014년도 이월금은 금 6,774,982,034원이며, 2015년도 세입총액은 금 8,949,805,685원이고, 2015년도 세출총액은 금 7,918,925,158원이었으며, 2015년 회계연도 이월금은 금 7,805,862,561원입니다.

▷ 산하시설의 2015년도 예산총액은 금 23,528,248,000원이며, 결산총액은 금 22,949,418,297원이며, 전출금 지원총액은 금 2,196,790,647원입니다.

▷ 2015년도 법인사무국 기부후원금 내역은

① 금융결제원 지로납부 후원금과 무통장입금 및 자동이체를 통한 내역은 금 8,820,765,459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.

② 승가원을 방문하여 직접 후원한 후원금품 내역은 방문자에게 고유번호가 인쇄된 영수증을 발급하여 정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.

③ 법인사무국을 통해 후원하는 후원금품 내역은 법인사무국에서 접수한 후 해당시설에 적절한 배정을 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.

□ 법인사무국 및 산하시설의 사업내용은 입안·기획·결과 보고가 적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고 있었으며, 단위 사업의 개발 노력도 높게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.

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본 감사는 첨부된 결산서가 2015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예산 집행내용을 재무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인정합니다

2016년 3월 9일

사회복지법인 승가원

감사 이 세 형



별첨 : 감사의견 세부사항

□ 산하시설 공통 사항

1. 세출 계정과목의 공통 기준 마련

산하시설 별로 세출과목에 대한 분류기준이 없어 동일한 사항이라도 산하시설별로 해석을 달리하여 계정과목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바 이를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출 계정과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2016년부터 적용하기를 바랍니다.

2. 법인전입금 사용에 대한 유의 사항

법인전입금은 비지정후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비지정후원금 사용규정상 간접비 사용비율이 50%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, 간접비 중 특히 업무추진비나 잡지출로의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규정에 맞는 세출을 하기 바랍니다.